

동물검역의 수출입검사 등에 관한 부적절 사례

2019년 4월 1일~ 2020년 3월 31일

수출·수입	품명	생산국/도착국가	위반 근거 조문	개요	사진	조치 상황
수출입	수정란·정액	중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제63조 제2호, 시행규칙 제45조, 제53조, 관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67조, 형법 제60조	필요한 세관과 동물검역 검사를 받지 않고, 인증서 교부를 받지 않고, 또한, 그것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8년 6월 29일에 오사카 항에서 중국으로 소 수정란 235개, 소 정액 130개를 불법 반출했다.		2019년 1월 29일에 동물검역소에서 오사카부 경찰 본부로 고발, 동년 3월 9일 일본인 2명(반출반입자 및 그 의뢰자)을 체포.
수입	축산물	베트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시행규칙 제43조	2019년 6월 13일, 베트남인은 베트남(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알의 반입금지 국가)에서 도쿄 국제공항(하네다)에 수입금지품(우제류 고기 약 10kg, 기러기목 조류의 알 약 25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19년 7월 21일, 경시청이 베트남인 1명을 체포.
수입	축산물	필리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시행규칙 제43조	① 2019년 5월 17일, 일본인은 필리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반입금지 국가)에서 후쿠오카 공항에 수입금지품(소시지 등 약 91.9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② 동년 5월 31일, 일본인은 필리핀에서 중부 국제공항에 수입금지품(돼지고기·닭고기 가공품 20.2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19년 5월 29일 동물검역소 모지사소장으로부터 후쿠오카 공항 경찰서에 고발, 또한, 동년 8월 15일 동물검역소 중부공항지소장으로부터 후쿠오카 공항 경찰서에 고발, 동년 8월 6일, 후쿠오카현 경찰이 일본인 2명을 체포, 또한, 동년 8월 27일에 재체포. http://www.maff.go.jp/aqs/topix/attach/pdf/futekisetsujirei-4.pdf
수입	축산물	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시행규칙 제43조	2019년 9월 3일 태국인은 태국(소고기, 돼지고기의 반입금지 국가)에서 도쿄 국제공항(하네다)에 수입금지품(소시지 1.0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19년 9월 3일, 동물검역소 하네다공항지소에서 경시청에 통보해, 동일 경시청이 태국인 1명을 체포.
수입	축산물	베트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시행규칙 제43조	①2019년 6월 17일 베트남인은 베트남(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알의 반입금지 국가)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에 수입금지품(돼지고기 소시지 및 돼지고기 가공품 5.25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②동년 8월 6일 베트남인은 베트남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에 수입금지품(개고기 17.6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③동년 8월 15일 베트남인은 베트남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에 수입금지품(소고기 2.0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19년 10월 15일, 오사카부 경찰이 베트남인 3명을 체포.
수입	축산물	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시행규칙 제43조	2019년 11월 25일, 태국인 태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에 수입금지품(소시지 10.45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20년 1월 21일, 치바현 경찰이 태국인 1명을 체포.
수입	축산물	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시행규칙 제45조 제3호	2019년 11월 14일, 대만인은 대만에서 중부 국제공항에 불법 반입품(우제류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 피떡[혈병(血餅)] 약 11kg, 기러기목 조류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 피떡[혈병(血餅)] 약 39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20년 3월 6일, 아이치현 경찰이 대만인 1명을 체포.